

무배당 ELS인컴 변액보험Ⅲ(일시납)  
약관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	4
주요내용 요약서 .....	7
보험용어해설 .....	10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1
제1조 【목적】 .....	11
제2조 【용어의 정의】 .....	1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15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15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5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6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17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17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17
제9조 【보험금 지급 등의 지연】 .....	18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19
제11조 【주소변경통지】 .....	19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19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	20
제3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20
제14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	20
제15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20
제16조 【펀드의 유형】 .....	22
제17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25
제18조 【쿠폰 자동인출에 관한 사항】 .....	25
제19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27
제20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	27
제21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27
제22조 【특별계정의 폐지】 .....	29
제23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30
제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31
제2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32
제2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32
제26조 【사기에 의한 계약】 .....	33
제5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	33
제27조 【계약의 성립】 .....	33
제28조 【청약의 철회】 .....	34
제2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37
제30조 【계약의 무효】 .....	38

제3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39
제32조 【일반계정으로 전환】 .....	39
제33조 【보험나이 등】 .....	40
제34조 【계약의 소멸】 .....	41
제35조 【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41
제6관 보험료의 납입 .....	41
제3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41
제37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	42
제38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42
제39조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43
제40조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44
제41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45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45
제4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45
제4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46
제4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46
제45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46
제46조 【해지환급금】 .....	47
제47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48
제48조 【보험계약대출】 .....	48
제49조 【배당금의 지급】 .....	49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49
제50조 【분쟁의 조정】 .....	49
제51조 【관할법원】 .....	49
제52조 【소멸시효】 .....	49
제53조 【약관의 해석】 .....	49
제5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50
제55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50
제56조 【개인정보보호】 .....	50
제57조 【준거법】 .....	50
제58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51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52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53
[별표3] 재해분류표.....	54

#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적립식 펀드 또는 예금, 적금 등과 다릅니다.**
- 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임의해지) 등은 각각 **사망보험금 청구일 또는 해지신청일부터 제3영업일 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이 보험계약의 기준가격 적용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은 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보험금은 **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규모 및 계약자적립금 인출**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 이 특약은 전환시점에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전환할 때 이 특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 계약의 해지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다만, 전환을 신청한 날부터 최소 제3영업일 이후)부터 보장개시일이 시작됩니다. 이 때, 전환전 계약은 연금전환일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기 때문입니다.
-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또는 종신연금형의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액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주요 민원사항

### 1. 주요민원 사례1

유형	변액보험의 사업비 차감 미인지 관련
내용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의 투자에 대해 고민하던 A고객(55세, 남)은 주거래 은행에 적절한 투자상품을 문의하였습니다.
	판매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변액보험에 가입하였고 청약서에 서명 이후 약관, 증권,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정상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수년이 경과하여 해지하지 위해 청약관련 중요 서류를 확인해보니 가입한 상품이 보험상품이며 많은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것

	<p>을 알게 되었으며, 상담을 통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p> <p>A고객은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p>
유의 사항	<p>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b>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b>한 후 특별계정으로 투입(특별계정 투입금액)·운용 되고, 특별계정적립금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증권거래 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의 보수비용 등 <b>특별계정 운용비용</b>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 <b>제반비용이 차감</b>됩니다.</p> <p>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b>중도해지 할 때</b> 지급되는 <b>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b> 있습니다.</p>

## 2. 주요민원 사례2

유형	변액보험의 투자손실 관련
내용	<p>B고객(35세,남)은 최근 저금리에 대한 불안 등 투자에 대한 고민 중 지인의 소개로 판매인C씨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p> <p>판매인C씨에게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 상담 후 변액보험 가입을 제안받았고, 상품 가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가입하였습니다.</p> <p>청약서에 서명 이후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납입되었으며 약관, 증권,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정상적으로 전달 받았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수개월이 경과하여 우연히 청약관련 중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보험상품이었고 원금도 보장이 안되는 상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p> <p>가입 당시 투자상품으로 권유받았으며 보험이라는 설명도 없이 판매인을 신뢰하고 가입하였으나 수익률이 과장되게 설명되어 오해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p>
유의 사항	<p>보험료의 대부분을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보험금 및 환급금이 증가하나, <b>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b>됩니다.</p>

## 주요내용 요약서

※ 아래의 사항은 약관 본문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본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보험금의 지급사유(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이 사망보험금 청구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해당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2. 계약 전 알릴 의무(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및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청약철회(제28조[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4. 자필서명(제2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및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5. 계약취소(제2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및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6. 계약의 무효(제3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위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7. 계약의 소멸(제34조[계약의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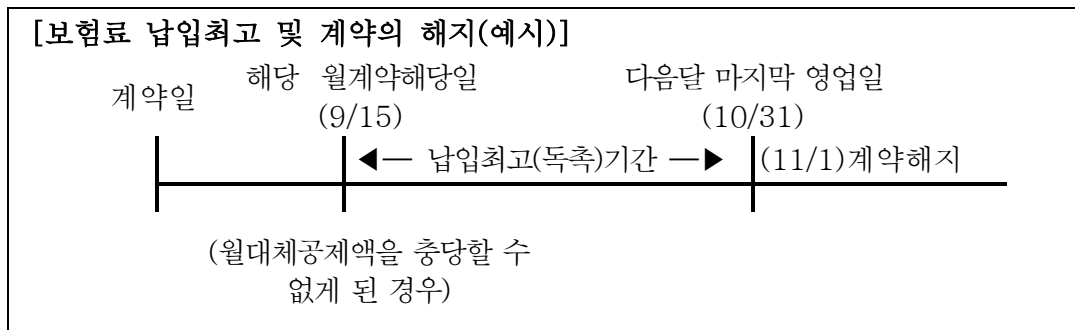
이 계약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8. 보험료 납입최고(독촉)와 계약해지(제39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매월 차감되는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 납입에 관계없이 부가하는 금액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우리회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매월 차감되는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 납입에 관계없이 부가하는 금액 및 최저사



망보험금 보증비용 등)을 충당할 수 없게 된 달의 월계약해당일 다음 날 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하며, 이는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40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용어해설

###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 계약자적립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보험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 ◦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무배당 ELS인컴 변액보험Ⅲ(일시납) 보통보험약관

※ 약관조항에 대한 '해설' 또는 '사례'는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약관조항의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 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사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사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3.0%)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5. 변액보험 등 관련 용어

가.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적립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 일반계정: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0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다목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합니다.

##### 【해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다. 특별계정: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해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험업법】** (법률 제13453호, 2015.7.31., 타법개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라. 펀드: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마. 계약자적립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해설: 계약자적립금】**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5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하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바.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한달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사.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을 청약할 때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 이후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 아. 추가납입보험료: 제32조(일반계정으로 전환)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와는 달리 계약자가 전환일 이후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배+추가납입시점까지의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 합계액-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이며,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은 「기본보험료의 2배+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 합계액」 이내로 합니다.
- 자. 위험보험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지급되는 보험금 중 「기본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차. 월대체공제액: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중 보험료 납입에 관계없이 부가하는 금액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카.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에 한합니다) 및 제40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에서 제18조(쿠폰 자동인출에 관한 사항) 및 제47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에 한합니다)에 따라 인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제3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동조 제3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최저사망보험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쿠폰이 인출되거나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각각 제18조(쿠폰 자동인출에 관한 사항) 제5항 및 제3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인출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타. 최저사망보험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청구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 하. 특별계정 운용보수: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거. 운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너.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더. 수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러. 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머. 일반계정으로 전환: 제32조(일반계정으로 전환)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 보험기간 동안 운용된 계약자적립금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은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 타목의 '최저사망보험금'을 최저한도로 합니다.

###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법률 제13658호, 2015.12.29., 일부개정)

제 3 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 3 조제 3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 3 조의 2 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2 항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 6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 7 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해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회사가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 9 조 【보험금 지급 등의 지연】**

-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써 펀드의 공정한 기준가격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각 펀드로의 자금투입 및 인출 등을 개시합니다.

1.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2.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를 준하는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펀드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펀드 자산을 매각하여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을 지급할 때 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펀드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펀드 자산을 매각하여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을 지급할 때 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대량의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을 지급할 때 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등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 10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 11 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 12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 제 13 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 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 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 【해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는 제 24 조(계약 전 알릴 의무) 등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連帶):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제3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 제 14 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해설: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 하목의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제 15 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

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 1 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제 9 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 2 조 제 1 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 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④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68호, 2016.2.3., 일부개정)

제 9 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 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제 16 조 【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ELS인컴조기지급형: 개별번호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개별번호 별로 파생결합증권[KOSPI200, HSCEI, HSI, S&P500, Eurostoxx50, Nikkei225, DAX, FTSE100, CAC40 지수에 주로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100%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 채권ETF 및 채권형 펀드에의 투자는 50%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ETF,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투자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펀드 각 번호별 설정일 또는 투자한 파생결합증권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이거

나, 투자금액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단기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MMF 포함), 채권, 채권 ETF, 채권형 펀드 등에 순자산(NAV)의 50%이상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ETF,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시장하락으로 인한 펀드의 수익률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위험을 헷지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이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순 투자비율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50%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펀드는 주로 월지급식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며 이는 투자 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초자산인 KOSPI200, HSCEI, HSI, S&P500, Eurostoxx50, Nikkei225, DAX, FTSE100, CAC40 지수를 매월 쿠폰지급평가일마다 관찰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펀드로 쿠폰이 지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월지급식 파생결합증권에 투자가 어려운 경우 자동조기상환식 파생결합증권에 투자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상환과 함께 쿠폰이 지급됩니다. 펀드에서 수령한 쿠폰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펀드에서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조기상환 평가일마다 기초지수를 관찰하여 조기상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펀드로 원금과 쿠폰이 조기상환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만기 시 상환됩니다. 또한 만기 시 기초자산 관찰결과가 투자 시 정해진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쿠폰이 지급되지 않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가 투자한 파생결합증권이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되는 경우, 당해 펀드는 다른 파생결합증권에 다시 투자하며, 이 경우 새로이 투자된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조건 및 수익률 등의 투자조건은 이미 상환된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펀드 각 번호별로 투자한 파생결합증권의 상기 주요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2. ELS인컴거치지급형: 개별번호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개별번호 별로 파생결합증권[KOSPI200, HSCEI, HSI, S&P500, Eurostoxx50, Nikkei225, DAX, FTSE100, CAC40 지수에 주로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100%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 채권ETF 및 채권형 펀드에의 투자는 50%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ETF,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투자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펀드 각 번호별 설정일 또는 투자한 파생결합증권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이거

나, 투자금액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단기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MMF 포함), 채권, 채권 ETF, 채권형 펀드 등에 순자산(NAV)의 50%이상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ETF,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시장하락으로 인한 펀드의 수익률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위험을 헷지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이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순 투자비율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50%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펀드는 주로 월지급식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며 이는 투자 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초자산인 KOSPI200, HSCEI, HSI, S&P500, Eurostoxx50, Nikkei225, DAX, FTSE100, CAC40 지수를 매월 쿠폰지급평가일마다 관찰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펀드로 쿠폰이 지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월지급식 파생결합증권에 투자가 어려운 경우 자동조기상환식 파생결합증권에 투자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상환과 함께 쿠폰이 지급됩니다. 펀드에서 수령한 쿠폰은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됩니다.

펀드에서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조기상환 평가일마다 기초지수를 관찰하여 조기상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펀드로 원금과 쿠폰이 조기상환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만기 시 상환됩니다. 또한 만기 시 기초자산 관찰결과가 투자 시 정해진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쿠폰이 지급되지 않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가 투자한 파생결합증권이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되는 경우, 당해 펀드는 다른 파생결합증권에 다시 투자하며, 이 경우 새로이 투자된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조건 및 수익률 등의 투자조건은 이미 상환된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펀드 각 번호별로 투자한 파생결합증권의 상기 주요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3. MMF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국내 단기채권 및 현금성 자산(회사채,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포함)등에 주로 투자하는 MMF형 펀드]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95%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순자산(NAV)의 4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② 다만, 제 1 항 제 3 호의 MMF 재간접형 펀드는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쿠폰 및 부활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여 운영됩니다.

③ 제 1 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제 1항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조기지급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 16조(펀드의 유형) 제 1항 제 1호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지급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 16조(펀드의 유형) 제 1항 제 2호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 40 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제 16조(펀드의 유형) 제 1항 제 3호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쿠폰 자동인출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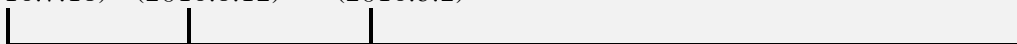
① 제 16조(펀드의 유형) 제 1항 제 1호의 펀드가 투자하는 월지급식 파생결합증권에서 매월 쿠폰지급평가기준에 따라 쿠폰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 쿠폰에서 연기준 1.3%p 를 차감한 금액을 「쿠폰발생일 + 제 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동조 제 1항 제 3호의 펀드로 이체하고 다시 이체된 날의 해당월 마지막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 16조(펀드의 유형) 제 1항 제 2호의 펀드가 투자하는 월지급식 파생결합증권에서 매월 쿠폰지급평가기준에 따라 쿠폰(최초 투자일부터 9개월 이내에 발생한 쿠폰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 쿠폰에서 연기준 1%p 를 차감한 금액을 「쿠폰발생일 + 제 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동조 제 1항 제 3호의 펀드로 이체하고 다시 이체된 날의 해당월 마지막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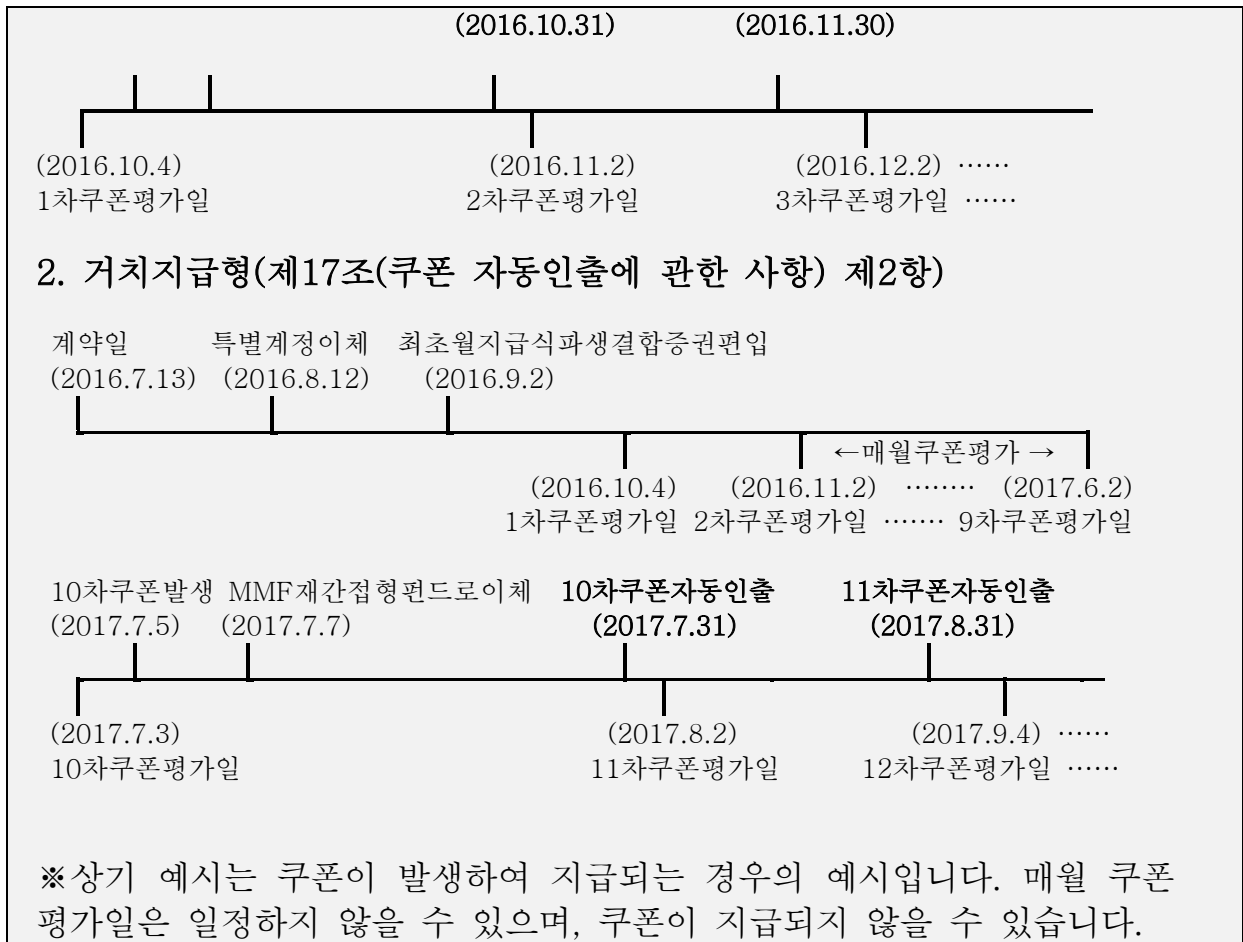
**【쿠폰 자동인출 예시】**

**1. 조기지급형(제17조(쿠폰 자동인출에 관한 사항) 제1항)**

계약일	특별계정이체	최초월지급식파생결합증권편입
(2016.7.13)	(2016.8.12)	(2016.9.2)



1차쿠폰발생	MMF재간접형펀드로이체(쿠폰발생일+ 제2영업일)		
(2016.10.6)	(2016.10.10)	1차쿠폰자동인출	2차쿠폰자동인출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16 조(펀드의 유형)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펀드가 각각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쿠폰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월지급식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
2. 투자한 월지급식 파생결합증권에서 정한 매월 쿠폰지급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월지급식 파생결합증권의 조기/만기 상환 이후 재투자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④ 지급계좌의 해지, 휴면 또는 지급계좌 변경 미통보 등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쿠폰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미지급된 쿠폰에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쿠폰 지급일 + 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16 조(펀드의 유형) 제 1 항 제 3 호의 펀드에 재투입하며, 다음 쿠폰 지급시 재투입된 미지급 쿠폰을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쿠폰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급신청일+ 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쿠폰이 인출되는 경우, 쿠폰 및 쿠폰의 투자 수익률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쿠폰인출 후 최저사망보험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인출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직후 계약자적립금}}{\text{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 제 19 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② 제 1 항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 제 20 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 원을 1 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 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 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당일 특별계정의 총부채 및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 하목의 '특별계정 운용보수'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 21 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8 조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 265 조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 2016.5.29., 타법개정)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10.25., 타법개정)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 제 22 조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3. 해당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4. 기타 제 1 호에서 제 3 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 17 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ELS 인컴조기 지급형 펀드 또는 ELS 인컴거치지급형 펀드의 경우, 펀드 번호 이동계획 포함)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 23 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 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10.25., 타법개정)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42호, 2016.5.29., 타법개정)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 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수시공시)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제 4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 24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 25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24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 46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 24 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26 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제 5 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27 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 28 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해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보험업법】 (법률 제13453호, 2015.7.31.,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10.25., 타법개정)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외국 정부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 라. 제 1 호부터 제 15 호까지 및 제 18 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보험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0호, 2016.7.28., 타법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제7-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 1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29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법률 제12762호, 2014.10.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 30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해설: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만 15 세 미

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 31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을 재발행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의 감액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납입보험료(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에 한합니다)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46 조(해지환급금) 제 2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로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 따라 감액할 경우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최저사망보험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경우 포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감액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직전 계약자적립금}}$$

④ 회사는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⑤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자가 제 5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해설: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 32 조 【일반계정으로 전환】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의 운용에 있어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전환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아래 제 1 호에서 제 3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합니다.

1. 보험계약일로부터 3 년이상 지난 계약
2.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 이상인 계약
3.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③ 제 2 항에서 계약자적립금은 「전환신청일+ 제 3 영업일」(이하 '전환일'이라 합니다)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전환되며, 회사는 전환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④ 제 16 조(펀드의 유형) 제 1 항 제 1 호의 펀드 또는 제 16 조(펀드의 유형) 제 1 항 제 2 호의 펀드에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만하여, 계약자는 제 3 항에서 정한 전환일을 「전환신청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조기 또는 만기상환일+ 제 2 영업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2 항 제 2 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제 2 항부터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일의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10%'에 미달하거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일반계정으로 전환 신청은 취소되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⑥ 제 2 항부터 제 4 항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에는 다시 특별계정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 제 33 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30 조(계약의 무효) 제 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사례: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해설: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란?】**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보험 계약 체결당시의 가입서류상의 기재사실이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 및 성별과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 제 34 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 35 조 【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분기별로 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제 6 관 보험료의 납입

### 제 36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해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 24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으며, 초과된 보험료에 대하여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제 37 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① 제 32 조(일반계정으로 전환)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전환일 이후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제 1 항의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 아목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해당 한도를 초과한 경우 더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 제 38 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제 32 조(일반계정으로 전환)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공시이율로 운용됩니다.

③ 제 1 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 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약일로부터 30 일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청약일로부터 30 일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제 3 영업일」로 합니다.
  2.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해당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④ 제 3 항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 27 조(계약의 성립) 제 4 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28 조(청약의 철회) 제 4 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제 39 조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46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 40 조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 39 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제 39 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월대체공제액 이상 회사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해설: 부활(효력회복)할 때 납입하는 보험료】

- 부활할 때 납입하는 보험료는 일시적 계약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 불과하므로, 제39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이 승낙되더라도 원금손실의 회복이나 장래 투자성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부활할 때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는 포함됩니다.
- 부활할 때 납입하는 보험료에 적용되는 '회사가 정하는 한도'란 5년분의 월대체공제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 보험료가 향후 5년간의 계약유지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계약자적립금 상당액(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과 제 2 항에서 정하는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해당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④ 제 3 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 3 영업일」
2. 보험료 납입 후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 + 제 3 영업일」

- ⑤ 제 2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24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26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27 조(계약의 성립) 제 2 항 및 제 3 항 및 제 36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 1 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⑥ 제 2 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로 계약을 청약할 때 제 24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2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⑦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이후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할 때에는 제 3 항 및 제 4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⑧ 변액보험은 제 2 항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 3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 3 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7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42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46 조(해지환급금) 제 2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 30 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46 조(해지환급금) 제 2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 43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46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 44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46 조(해지환급금) 제 2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 45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 일부터 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1 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의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해설: 공시이율】**

공시이율이라 함은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공표되는 변동이율을 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일복리 0.003403%)로,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0% (일복리 0.002726%)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해설: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이라 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15년 동안 0.5%인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최저보증이율(1.25%)로,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증이율(1.00%)로 적립됩니다.

**제 46 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 3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2 항, 제 42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및 제 44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 3 항에 따라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 + 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④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⑤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 47 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제 32 조(일반계정으로 전환)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전환일 이후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인출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의 60%범위 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 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인출할 때의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매년 최초 4 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를 면제합니다.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인출은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의 20%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계약 후 10 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쿠폰인출금액 포함)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가능합니다.

#### 【사례: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예시】

기본보험료 : 3,000만원 납입, 인출시점의 해지환급금(인출직전 계약자적립금) : 3,600만원

⇒ 인출시점의 해지환급금 3,600만원의 60%범위 내 :  $3,600\text{만원} \times 60\% = 2,160\text{만원}$

⇒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 :  $3,600\text{만원} - 2,160\text{만원} = 1,440\text{만원} >$  기본보험료의 20% : 600만원

∴ 계약자적립금 인출가능금액 : 2,160만원(다만, 계약 후 10년이내 기준)

#### 제 48 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 1 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39 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 49 조 【배당금의 지급】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 8 관 분쟁의 조정 등

#### 제 50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51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 52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해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해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 53 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 54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55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56 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57 조 【준거법】**

- ①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탁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탁약관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 58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제3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보험금 청구일 + 제3영업 일]의 계약자적립금

- (주) 1.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5 호 마목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상기 사망보험금이 사망보험금 청구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해당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미공제된 월대체공제액을 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월대체공제액은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상기 표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료의 10%+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및 제46조 제5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지환급금 (제46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 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46조 제2항)	「청구일 + 제3영업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5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적용이율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3]

## 재 해 분 류 표

###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74호, 2015.8.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제 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 형간염

###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 7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5-309 호, 2016.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 8 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